

enchem	윤리규정	문서번호		EC-028	
		제/개정일자		2021. 06. 23	
		개정번호	Rev. 1	Page	1 / 3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의 지침을 안내하고, 윤리규범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 기준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의무와 책임)

- ① 전 임직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실천 지침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바탕인 윤리규범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금전" 또는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② "향응" 또는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③ "편의"라 함은 금전 또는 향응 및 접대를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 등의 지원을 말한다.
- ④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유/무형적 손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윤리규범

제 4 조 (고객존중)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 5 조 (법규준수)

사업 및 영업 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제 6 조 (공정거래)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르며, 거래 당사자들과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제 7 조 (주주권익)

건실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제 8 조 (사회적책임과 의무)

- 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윤리규정	문서번호		EC-028	
		제/개정일자		2021. 06. 23	
		개정번호	Rev. 1	Page	2 / 3

② 고용의 창출과 성실 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제 9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 ①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10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엔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자세를 유지한다.
- ② 임직원 각자가 엔캠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예의 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로써 엔캠의 명예를 지킨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⑤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⑥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 ⑦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11조 (윤리규범의 준수)

- ①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 조직에 알리고 상담해야 하며, 감사 조직은 임직원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하여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강령

제12조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활동)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 수수 금지
 -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가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줘야 한다.
 - 2. 임직원의 가족 또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 3. 사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일반적 상식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가. 금품(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등), 향응 및 접대, 편의 제공

enchem	윤리규정	문서번호		EC-028	
		제/개정일자		2021. 06. 23	
		개정번호	Rev. 1	Page	3 / 3

나. 차용, 염가매입 및 고가매도

다. 부채 상환, 보증 및 금전 대차

라.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거래 체결 약속 등)

② 이해관계사에 대한 지분 참여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금지

1.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3.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와 거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4.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불평등 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부정청탁 및 사례 제공 금지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진에 보고하고 법무 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① 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적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③ 세대, 국가/지역, 성별간 정서적·관습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 ④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심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4조 (회사 자산의 보호)

- ①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에 있다.
- ② 회사의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를 활용하는 행위, 사전 승인없이 외부 반출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부칙 < 2020. 09. 16 >

이 규정은 2020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1. 06. 23 >

이 규정은 2021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